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9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김준혁ㆍ이병진ㆍ이기헌

권칠승 • 이연희 • 차지호

김영호 • 박희승 • 김영진

이수진 • 백혜련 • 안규백

강유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 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 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회의"를 "회의(국가기관이 제1항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 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2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u>회의</u> 의	<u>회의(국</u>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가기관이 제1항의 주요 정책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	에서 구성된 비상설・비법정
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는 회의를 포함한다)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